

## 불법촬영물등 삭제·차단 전년대비 4.5배 늘어

-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제도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
- 방통위, 90개 사업자의 '22년도 투명성보고서 홈페이지 공개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, 이하 '방통위')는 「'22년도 불법촬영물등\*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」(이하 '투명성보고서')를 분석한 결과, '22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삭제·차단은 총153,491건으로 전년대비 4.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\*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촬영물, 복제물, 편집물, 합성물, 가공물, 「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

또한 '22년도 이용자와 대리신고 삭제요청기관\*의 불법촬영물등 신고도 총 218,931건으로 전년도 신고 14,977\*\*건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하였다.

\*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제30조의5(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) 제1항에 의거  
1) 「성폭력방지법」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, 2)한국여성인권진흥원, 3)십대여성인권센터·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방통위가 고시한 17개 기관

\*\* '21년은 신고 1건 당 다수의 URL이 있는 경우가 있어 '22년도와 절대비교는 어려움

이처럼 불법촬영물등의 신고·삭제/차단건수가 급증한 것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.

이번에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에 따라 네이버, 카카오, 구글, 메타, 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사업자\*와 웹하드 등 90개 사업자이며, 투명성보고서에는 '22년도 불법촬영물 신고·삭제/차단 현황 및 기술적·관리적 조치 내역 등 유통방지를 위한 법정 의무 사항을 담고 있다.

\* SNS, 커뮤니티, 인터넷개인방송, 검색포털 등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 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업자

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에 따라 지난 1월 일정기준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 등으로부터 투명성보고서를 제출받아 대리신고 삭제요청기관 등의 신고건과 비교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자료를 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었다.

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“N번방 사건 이후 제도를 개선하고 민·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촬영물이 유통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” 고 언급하고,

“특히 불법촬영물등의 유포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국민 모두가 감시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능을 강화해 달라” 고 주문하였다.

방통위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적·관리적 조치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자 교육을 추가 실시하는 한편,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민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 끝.

담당 부서	이용자정책국	책임자	과 장	윤웅현 (02-2110-1560)
	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	담당자	사무관	김기호 (02-2110-1549)

